

2025년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5년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2일

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 분야	임용 직급	임용 인원	계약 기간	담당업무	근무예정 부서
정책지원관	지방행정6급 (일반임기제)	1명	1년	○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(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심의 등) ○ 의원 서류제출요구, 행정사무감사·조사, 도정질의 관련 자료 작성·취합·분석	의회사무처
정책지원관	지방행정7급 (일반임기제)	1명	1년	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 및 자료 작성 지원 등 ○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	

※ 근무기간은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, 근무부서는 인력 운영상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2 임용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14호)
- 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 임용자격 기준

가. 공통요건(기준일 : 면접시행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<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>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<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
○ 주소지·성별·연령 제한 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)

나.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일)

▶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분야	직급	임용자격 기준
정책지원관	지방행정 6급 (일반임제)	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 지방의회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) 기업체 등에서 법제 법률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: 지방의회 및 국회에서 입법조사·지원 업무 수행경력자
	지방행정 7급 (일반임제)	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 지방의회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) 기업체 등에서 법제 법률해석 지방행정 지방자치 감사 예산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요건 : 지방의회 및 국회에서 입법조사·지원 업무 수행경력자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4 보수수준

가. 연봉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연봉상한액	연봉하한액
일반임기제 6급	83,677천원	55,756천원
일반임기제 7급	68,388천원	48,572천원

※「고용보험법」제10조 제1항 제3호 및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(임기제공무원)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5 시험방법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,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.

※ 서류전형 기준

1. 자기소개서 / 2. 직무수행 계획서
3.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

나. 2차시험 : 면접시험

- 대 상 자 :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
- 면접내용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① (직무관련 논술) 분야별 현안 및 정책주제에 대한 검토·분석
 - * 응시자의 논술답안지는 별도 채점하지 않고,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계획
 - ② (면접시험 실시)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/ 직무관련(논술자료 등) 면접
- (면접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(합격자 결정)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6 시험일정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1. 24.(월) ~ 2025. 11. 26.(수), 18:00까지 /3일간
- 접수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(1층)
- 접수방법 : **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** ☞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인사팀으로 연락바람
 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 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내에만 접수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
- ▶ 주소 : (우54968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(1층)
- ▶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(☎063-280-4782)
- ▶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'**통상환증서**'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(현금X)

나. 1차시험(서류전형) : 2025. 12. 8.(월)

☞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문(일정 안내 등) : 12. 9(화)

다. 2차시험(면접시험) : 2025년 12월중 실시

라.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5년 12월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
7 응시자 제출서류

가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(별지서식 1호)

나. 응시원서 1부(별지서식 2호)

- 응시수수료 :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7천원(6·7급)
※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(09:00~17:00)카드결제만 가능 *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

다. 이력서 1부(별지서식 3호)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

라. 자기소개서(별지서식 4호)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(별지서식 5호)

-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
*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상 학력, 경력,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기술시 서류전형에서 감점처리될 수 있음.

마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(사본)

-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바.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증명서에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

※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
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※ 프리랜서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(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)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
사.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(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)

<p>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※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</p> <p>② 소득금액 증명서(국세청 발급) 1부. 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가능</p>
--

아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서식 제6호)

자. 주민등록초본 1부(남여 모두 제출 : 병적사항 포함-남자에 한함)

차.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
카.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타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별지서식 7호)

- ☞ 유의사항 :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

8 기타사항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다.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라. 모든 증명서는 원본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) 제출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,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)내의 서류 이어야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(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※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
- 사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시험 및 업무 관련 문의 :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
(☎ 063-280-4782)

붙임 1 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(일반임기제)	1명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	
전북특별자치도의회	의회사무처 또는 전문위원실	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원 입법·정책자료 수집·분석·검토 지원 ○ 조례 제·개정안 등 각종 의안검토 및 심사지원 ○ 예산·결산안 심사지원 ○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등 작성 및 관련자료 분석 지원 ○ 도정질문, 5분발언 등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○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	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논리적·분석적·객관적 사고, 법적 사고력 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회와 입법·정책지원 등에 대한 지식 ○ 지방의회 회기 운영,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○ 조례안, 건의·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의 유형 및 제안 등의 관리와 작성에 필요한 지식 ○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, 예산, 현안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지식 	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	
	<p>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※ 관련분야 실무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, 연구소·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) 기업체 등에서 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, 의원보좌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	
우대요건	지방의회 및 국회에서 입법·조사·지원 업무 수행경력자	

붙임 2 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(일반임기제)	1명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	
전북특별자치도의회	의회사무처 또는 전문위원실	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원 입법·정책자료 수집·분석·검토 지원 ○ 조례 제·개정안 등 각종 의안검토 및 심사지원 ○ 예산·결산안 심사지원 ○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등 작성 및 관련자료 분석 지원 ○ 도정질문, 5분발언 등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 관련 자료 작성 및 지원 ○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	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논리적·분석적·객관적 사고, 법적 사고력 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회와 입법·정책지원 등에 대한 지식 ○ 지방의회 회기 운영,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○ 조례안, 건의·결의안, 예산안·결산 등 의안의 유형 및 제안 등의 관리와 작성에 필요한 지식 ○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, 예산, 현안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지식 	
응시자격요건	관련분야	
	<p>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※ 관련분야 실무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, 연구소·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) 기업체 등에서 법제, 법률해석, 지방행정, 지방자치, 감사, 예산 등 관련 입법조사지원, 의원보좌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	
우대요건	지방의회 및 국회에서 입법·조사·지원 업무 수행경력자	